

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

『영유아보육법』 제24조 및 『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』 제14조 ~ 제16조에 따라 「서울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」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3. 7. 6.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1. 위탁대상 시설현황

시 설 명	소 재 지	규 모(㎡)	아동현황 (정원)	개 원	비 고
동 화 나 라 어 린 이 집	중구 다산로38길 80	1,099㎡ (지하1층~지상3층)	165명	1995.3.	장애통합 시간연장

2. 위탁 기간 : 계약일로부터 5년

3. 신청 자격 : 법인 또는 단체(개인 제외)

- ▶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- ▶ 정관의 목적 사업에 보육 또는 유아교육 등 관련 사업이 명시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
- * 운영체의 원장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(국공립어린이집 원장 경력자 우대)

4. 신청 제외 대상

- 가. 『영유아보육법』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- 나.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(자)
- 다.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(시정명령 제외)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자

라. 운영주체의 지도·감독 시 공신력,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
 마. 주된 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

5. 신청서 접수

가. 공고기간 : 2023. 7. 6.(목) ~ 2023. 7. 26.(수)

나. 접수기간 : 2023. 7. 14.(금) ~ 2023. 7. 26.(수) 18:00까지

다. 접수장소 : 중구청 가족정책과 (본관 5층)

라. 접수방법 :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(월~금, 09:00~18:00)

(※토요일, 공휴일 및 우편, 택배,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)

마. 제출서류

구분	서류항목	운영체		비고
		법인	단체	
개별사항	■ 법인의 정관,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(법인 인감증명서 첨부)	○		
	■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		○	
	■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	○	○	
공통사항	■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			
	■ 이력서, 자기소개서(법인, 단체의 경우 대표자, 원장)			
	■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(법인, 단체의 경우 대표자, 원장)			
	■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(자산현황)			
	- 부동산(등기부등본), 동산(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)			
	-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			
	- 법인(법인명의 재산), 단체(단체명의 재산)			
	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			
	■ 자부담 승낙서			
	■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			
	■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(평가 등)			

※ 첨부
제출서식
의거작성

바. 제출부수 : 신청서 및 관련 서류 16부 (원본 1부, 사본 15부), 요약서 (16부, 3~5페이지 분량)

※ **꼭수표시 요망 및 자산현황 관련서류(부동산 등기부등본)는 원본에만 첨부**

- 심사자료는 양면 인쇄, 쪽 표시, 목차 라벨 표시, 반드시 제본

- 면접심사 발표용 PPT를 2023. 7. 28.(금) 18시까지 e-mail 제출(lym314@junggu.seoul.kr)

6. 사업설명회 : 생략

※ 구청방문 시 시설개요, 위탁시설 업무, 위탁절차, 자료작성 및 심의기준 등 설명

7. 위탁조건

- 가.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
- 나.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(영아 . 장애아 . 시간연장 . 다문화아동)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, 특히 각 시설별 보육유형에 의한 취약보육은 반드시 실시하고 구에서 권장하는 취약보육에 대해 우선 실시하여야 함
- 다.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,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라. 법인, 단체의 경우 대표자 및 관계자와 친.인척 원장 임용금지 및 대표자. 관계자.원장의 친.인척 종사자 임용 금지하며 개인의 경우 원장의 친.인척 종사자 임용 금지함
 - ※ 친.인척 : 직계존비속, 배우자, 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- 마.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,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, 중구 영유아보육조례, 위·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행하지 않을 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22조(위탁의 취소 및 해지)규정에 의거 위탁 취소
- 바.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『어린이집 사무 위·수탁계약서』로 별도 계약 체결

8.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

- 가. 선정방법 :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(※ 심사일은 별도 통지)
- 나. 심사항목 : 5개 분야
 - 어린이집 운영계획, 어린이집 원장(내정자)의 전문성,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, 운영체의 책무성 및 공신력, 운영체의 재정능력
 - ※ 「2023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(신규·변경) 공통심사 기준표 항목」 참고
- 다. 면접방법
 - 법인·단체 대표자(당일 위임자)와 원장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5분 이내 운영계획 발표 및 원장의 전문성 면접(PPT발표)후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 (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)
- 라. 결과발표 : 중구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 수탁자에게 개별 통지

9. 유의사항

- 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 후 열람·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
- 나.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서류의 내용이 관계기관 확인시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심의 제외,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
- 다. 위탁 운영조건 등 관련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.
- 라.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
- 마. 법인·단체 대표자(당일 위임자)와 원장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5분 이내 운영계획 발표 및 원장의 전문성 면접 실시함.
- 바.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
- 사. 위탁신청서는 중구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「고시/공고」에 공고문과 게재 함
- 아. 위탁신청서류 제출 시 요약서(3~5페이지 분량)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.
- 자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가족정책과(**☎02-3396-5412**)로 문의